행정안전부	보 도 자 료	작성과	생활공간정책과
	2017년 12월 14일(목) 조간 (12. 13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담당자	과 장 김상진 사무관 김영아
		연락처	02-2100-4360 02-2100-4369

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앤다

- 2018.1.1.부터 휴지통 없애고 청소·보수 중일 때는 사전 알림 의무 -

□ 내년부터 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,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률이 시행된다.

□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< 2018년부터 시행되는 공중화장실 개선사항 >

□ 주요 개선 내용

① 대변기칸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(기존 + 신축화장실)

② 청소·보수를 위해 작업자 출입시 안내표지판 설치(기존 + 신축화장실)

③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설치, 남자화장실 소변기가림막 설치(신축+새단장(리모델링)하는 화장실만 해당)

□ 시행일 : 2018년 1월 1일

□ 휴지통 없는 깨끗한 화장실

○ (휴지통 제거) 그 동안 미관은 물론, 악취와 해충을 동반했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내년부터 사라짐에 따라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.

○ (위생용품 수거함 비치) 다만,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비치된다.

□ **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**

○ **(청소·보수 알림)** 여성이 남성화장실을,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중일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중임을 안내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줄인다.

○ **(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)** 앞으로 신축하거나 새단장(리모델링)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예방을 도모한다. 다만, 기존 화장실은 입구 가림막 설치 등으로 개선하도록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등에 권장하고 있다.

○ **(소변기 가림막 설치)** 남성화장실 내부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여 사생활 침해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. 하지만, 시설 구조,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축하거나 새단장하는 화장실에 적용된다.

□ **깨끗한 화장실을 위하여 이용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**

○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"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가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며,

○ 휴지통 없는 화장실, 청소·보수중 안내, 내부가 안 보이는 화장실,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 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되기를 희망한다."라고 밝혔다.

참고	휴지통 없애기 홍보자료

□ 홍보영상 주요 화면

□ 포스터·스티커 표준 도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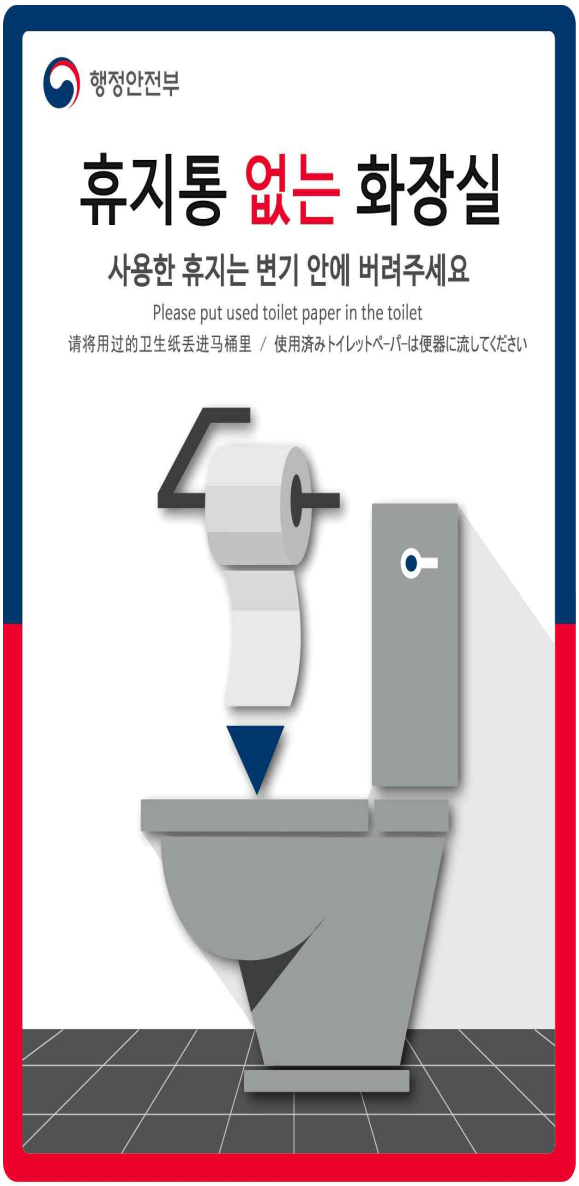

화장실 입구 포스터

내부 스티커(남자화장실용)

내부 스티커(여자화장실용)